

04

소비자이익 분야

-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,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,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등 소비자의 이익과 관련된 26개 법률의 벌칙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, 아래에 수록된 사례는 법 시행일(2011. 9. 30.)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의 이익과 관련되어 위원회에 신고된 것 중 주요사례와 다수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례를 카툰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.

유사석유 판매

주유기 아래에 정품석유와 유사석유의 저장탱크와 배관을 따로 설치하고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차량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행위

※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



사례 1 병·의원 간판 명칭 허위표시

▶ 신고 내용

- 전문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의료법에 명시된 간판 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명칭을 사용한다는 신고

▶ 확인 및 처리결과

- 병·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표기할 때 전문의 자격도 없으면서 전문의 명칭(성형외과, 소아과, 이비인후과 등)을 불법으로 표기(사용)하는 것은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관할

지자체 송부

- 조사결과, 불법 행위가 확인되어 행정처분(간판교체)25곳, 업무정지 1개소

사례 2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

▶ 신고 내용

- ○○수산 대표 ○○○, ○○○○ 대표 ○○○은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원산지의 표시기준)에 따라 수족관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,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, 수족관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거짓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

▶ 확인 및 처리결과

- 위와 같은 행위는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의 벌칙(1억원 이하)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로서, 수족관 원산지 미표시 또는 혼동표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관할 조사기관 송부

사례 3 공인중개업자의 성명 미표기 옥외광고물 설치

▶ 신고 내용

- 공인중개소 영업 시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

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대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신고

▶ 확인 및 처리결과

-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명칭) 규정에 중개업자는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, 세로형간판,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조사가 필요하여 관할 조사기관 송부

사례 4 친환경농산물 허위인증 의혹

▶ 신고 내용

- ○○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센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심사사항을 숨긴 채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유기재배 인증을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신고

▶ 확인 및 처리결과

- 확인 결과, 표본 2개 농가의 검사시료에서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적합판정을 한 혐의가 있어 감독기관 송부
- 당해 인증기관에 ‘인증업무 정지 3개월’ 처분

사례 5 온라인 소액결제 피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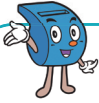
▶ 신고 내용

-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웹 사이트 등에 회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,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신고

▶ 확인 및 처리결과

-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송부
- 조사결과,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휴대폰 자동결제금액 환불, 해당 사이트 '표준전자결제창' 도입 · 제공되어 정상결제 진행 중





카툰 I 밀가루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 매점매석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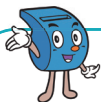
밀가루, 참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을
매점매석한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일까요?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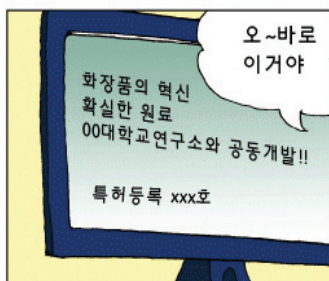
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1항 제2호, 제5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입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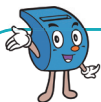


카툰Ⅱ 화장품 허위과대광고

허위광고 관련 공익신고사건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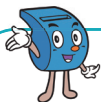
카툰Ⅲ 사료에 불순물을 섞어 판매한 행위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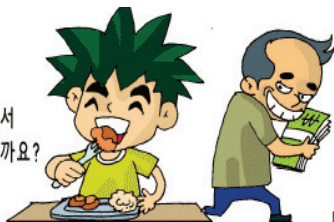
이처럼 최근 사료값 급증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있다고 있으면서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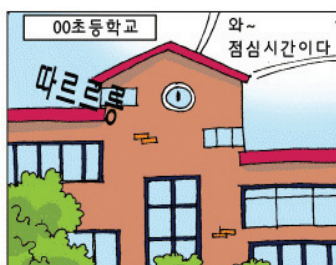


카툰Ⅳ 쇠고기 이력 거짓 표시해 납품한 행위

쇠고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해서
납품한 행위는 공익침해 행위일까요?



by 강대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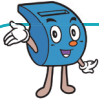


부패·공익침해 신고
1398



-쇠고기 유통 및 판매업체에서 쇠고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 행위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-





카툰Ⅴ 영업정지기간 중 편육 제조·판매 행위

영업정지 기간 중에 편육을 제조
판매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일까요?



강대영





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행위로 「식품위생법」의 벌칙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입니다



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